

#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안내서



# 법 구조 체계 정비

10차례 일부 개정 등으로 복잡해진  
법 구조 및 조항의 명확화



현행

제1장 총칙 (8개 조문)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20개 조문)

제3장 보칙 (4개 조문)

제4장 벌칙 (4개 조문)



개정

제1장 총칙 (5개 조문)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6개 조문)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11개 조문)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6개 조문)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5개 조문)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5개 조문)

제7장 보칙 (4개 조문)

제8장 벌칙 (4개 조문)

## 연구자 보호 강화

- 법률의 제정 취지인 **연구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다양한 규정 신설·개정
- **연구실책임자의 책무 강화**(제9조)
  -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보호구 착용지도' 의무화



##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강화**(제21조)  
- 임시건강검진,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 단축 등 이행 근거 마련
-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보호규정 마련**(제25조)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내용 구체화**(제25조)

- 
- 
- 1 정밀안전진단 실시
  - 2 유해인자의 제거
  - 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 4 연구실의 사용금지
  - 5 연구실의 철거
  - 6 그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 연구현장 규제완화

- 비의도적 법 위반 또는 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제33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대행기간 연장**(제10조)  
(출산 휴가 시 **90일로 연장 가능**)



##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기관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11조)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의무화(제5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제34조~제38조)

'22년 6월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예정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 연구실 안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육성

#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제8조)

기관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책무의식 제고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